4-2 **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(조제·투여기관만 제출)**

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

제1조	동의목적	①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하며,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, 이에 대한 비용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(조기지급)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(조기지급)에서 제외 후 공제(상계)를 동의한다. ②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,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,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내용에 대해 당사자(담당기관-질병청)합의한 바, 질병관리청이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관련 서류(통지서 등)를 제출하는데 동의한다. ※ 담당기관: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(약국, 의료기관)

제2조	"담당기관"	기 관 명		요양기관번호	
		요양기관종별		취 급 약 제	□ 팍스로비드 □ 라게브리오 □ 베클루리주(병원급 이상)
		주소(소재지)			
		전 화		전자우편주소	
		대 표 자		생 년 월 일	
		면 허 종 별		면 허 번 호	
		재고관리시스템	[ ] 사 용 ※ 재고관리시스템 등록시 명칭 :		

제3조	담당기관 조건	별지 뒷면 참조
제4조	신의성실의 원칙 및 담당기관 지정 해지	▪ 담당기관은 본 동의서에 의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▪ 질병관리청은 담당기관의 과실로 인해 무상공급 약제 관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담당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제5조	동의기간	▪ 본 동의서는 동의일로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동의서를 작성하고, 본 동의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)는 1부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.

* 시군구청장은 본 동의서를 담당기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.

동의일자: 년 월 일

<담당기관> 기관명 :

대표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질병관리청장 귀하

	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